

공제보험 사고 정보 수집 및 활용 관련 제도개선 방안

최창희 연구위원

요약

일부 보험종목의 경우 보험소비자가 공제보험과 민간보험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보험소비자의 이동이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공제보험의 사고 정보를 활용하는 데 제도적 제약이 존재하여 보험회사가 리스크 수준에 맞는 적절한 보험요율을 산출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공제보험자와 보험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공제보험의 사고 정보를 보험요율 산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 우리나라에는 80여 개의 공제보험자가 있고, 이들 중 일부 공제보험자는 민간보험회사와 보험시장을 공유함
 - ‘공제(共濟)’라는 용어는 통상 사인들이 유사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결성하는 공제조합(共濟組合) 또는 공제조합이 구성원들에게 유사(類似)보험을 제공하는 공제사업(共濟事業) 등을 지칭하는 데 사용됨¹⁾
 - 저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80여 개의 공제보험자가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음²⁾
 - 공인(公人)·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 또는 특정 사업자에 특화된 공제³⁾를 제외한 일부 공제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공제보험 또는 민간 보험회사의 보험(이하 ‘보험’)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 손해보험을 취급하는 다수의 공제보험의 경우 조합원이 공제보험 대신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⁴⁾
 - 현존하는 60여 개 의무보험 중 30개 의무보험의 근거법이 가입 대상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음(부록 표 1) 참조)
 - 공제보험의 경우 대부분 실적을 공시하지 않아 시장점유율을 가늠하기 어려우나 전우현·제철웅(2018)에 따르면 8개 공제가 보증보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보증잔액 기준)은 38.2% 수준이었음⁵⁾

1) 최창희·홍민지(2020), 「공제보험 현황 조사」, 보험연구원, p. 2

2) 최창희·홍민지(2020), 「공제보험 현황 조사」, 보험연구원, p. 11의 목록에 누락된 ‘공간정보산업협회(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대한주택관리사협회(공제사업단), 수상레저안전연합회, 스포츠안전재단,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LPG산업협회, 한국교육시설안전원(교육시설공제),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위산업공제조합),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예선원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을 추가하면 74개, 수협,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일반공제를 추가하면 78개 공제가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3) 예를 들어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관세사회, 담배인삼공제회, 세우회, 철도공제조합, 대한의사복지공제회, 교정공제회, 민주화운동공제회, 한국교육안전공제회, 상조보증공제, 한국교육안전공제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임

4)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전국택시공제조합, 중소기업중앙회(파란우산공제), 한국LPG산업협회, 방위산업공제조합 외 다수임; 최창희·홍민지(2020), 「공제보험 현황 조사」, 보험연구원, pp. 17~19의 <표 II-2>와 각 공제보험자 홈페이지를 참조함

5) 전우현·제철웅(2018), 「보증보험과 보증공제 관리감독 일원화」, 용역보고서, 비교사법학회, p. 18 참조함

- 보험업계가 공제보험의 계약정보를 일부 수집·활용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보험가입 대상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요율에 반영되지 않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제8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④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 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험요율 산출기관(현재 보험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음
 - 이를 위하여 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와 공제보험자의 보험계약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⁶⁾
 -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주요 목적은 의무보험 가입 대상 관리임⁷⁾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사례를 참고해 볼 때, 공제보험과 보험 사이에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보험회사가 공제보험의 보험사고를 반영한 보험요율을 산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 최근 공제보험자가 보유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계약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였음
 - LPG(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2021년 기준 보험계약 건수와 보험료는 각각 3,100여 건과 7억 3천만 원 수준이고 공제보험(한국LPG산업협회)의 비중은 약 30% 내외임⁸⁾
 - 한국LPG산업협회에 광주(2021년, 재산 피해 5억 원), 대구(2022년, 2명 사망, 재산 피해 10억 원), 평창(2024, 1명 사망, 2명 중상, 재산 피해 30억 원)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음⁹⁾
 - 특정 공제보험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여도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보험개발원이 이를 참조순보험요율¹⁰⁾에 반영할 수 없음
 -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르면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순보험요율 산출 등을 위하여 보험회사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그러나 「보험업법」에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공제보험자의 보험사고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없음
- 일부 보험종목의 경우 공제보험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가 보험회사가 사용하는 요율에 반영되지 않아 보험회사가 실제 리스크 수준에 맞는 보험료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보험회사 또는 공제 보험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음
 - 보험회사가 공제보험 사고 정보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에 부합하는 보험요율을 사용할 수 없음¹¹⁾

6) 수협, 신협, 새마을,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프트웨어공제조합,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한국예산업협동조합, 수상레저안전연합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 한국엘피가스산업협회, 스포츠안전재단, 의료기기협동조합 등의 공제보험자와 보험회사의 정보를 수집함;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함

7) 재난보험24 홈페이지(<https://www.ins24.go.kr/>)를 참조함

8)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통계연보 2022년」, p. 430의 '액화석유가스' 통계에 한국LPG산업협회 자료를 합산함

9) 이 통계는 손해사정 결과이고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은 이보다 낮을 수 있음

10) 참조순보험요율은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의 경험통계 등을 바탕으로 보험종목별·위험별 특성에 따른 위험률을 산출하거나 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순보험요율임. 보험회사가 이를 사용하거나 참조할 수 있음

11)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험요율이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給付)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2. 보험요율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칠 정도로 낮지 아니할 것

- 보험계약자가 공제보험과 보험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일부 보험종목의 경우, 공제보험의 대형 사고가 보험회사의 요율에 반영되지 않아 보험회사는 실제 리스크에 비하여 낮은 보험료를 사용하게 됨
 - 보험회사가 사용하는 보험요율에 공제보험의 대형 사고가 반영되지 않을 시 공제보험자의 보험사업이 지속가능성을 상실할 수 있음
 - 공제보험자가 급격하게 보험요율을 인상할 경우 보험계약이 보험료가 낮은 보험회사에 쏠리게 되고, 보험요율을 올리지 않으면 결손을 감수하며 보험사업을 운영하여야 함
 -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에 대형 사고가 발생할 시 정반대의 문제(보험계약이 공제보험으로 쏠리거나, 보험회사가 손해를 감수하여야 함)가 발생함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을 위하여 현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이 일부 공제에 대하여 보험사고를 참조순 보험요율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에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 다른 법에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 공제보험자의 보험사고 정보를 보험요율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를 위하여 다수의 법을 개정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보험업법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효과적임
 - 제도개선은 '공제보험자와 보험회사가 공제보험 보험사고 정보의 참조순보험요율 반영에 동의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이 이를 심사하여 허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함
 - 보험개발원은 이미 전산 시스템을 갖추고 정보 수집 및 참조순보험요율 산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전문성 및 비용 측면에서 기존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공제보험의 사고 정보 수집 및 이를 활용한 참조순보험요율 산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됨

부록.

〈부록 표 1〉 보험계약자가 보험·공제보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의무보험

순번	근거법	보험
1	건설기술관리법	설계감리보상
2	공인중개사법	보증보험
3	공인회계사법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4	관광진흥법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5	관세사법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6	궤도운송법	배상
7	낙시관리 및 육성법	낙시어선배상책임보험
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9	변호사법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10	부동산공시법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11	사회복지사업법	손해배상책임보험
12	세무사법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13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안전
14	신재생에너지법	배상책임보험
1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놀이시설종합보험
16	액화석유가스법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17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배상책임보험
18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유류오염배상책임보험, 선주종합보험
19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20	유어장규칙	영업배상책임보험
21	인감증명법 시행령	지자체업무배상책임보험
22	입목에 관한 법률	산림보험
2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24	전자금융거래법	보증보험
25	전자상거래법	보증보험
26	주택법	보증보험
27	주택법	보증보험
28	청소년활동진흥법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29	학원법	시설배상책임보험
3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주: 일부 법은 약칭을 사용하였음

자료: 손해보험협회가 제공한 자료를 편집함